

2021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(단체 공모)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업 신진작가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, 화랑의 체계적 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의 일환으로 〈단체 공모〉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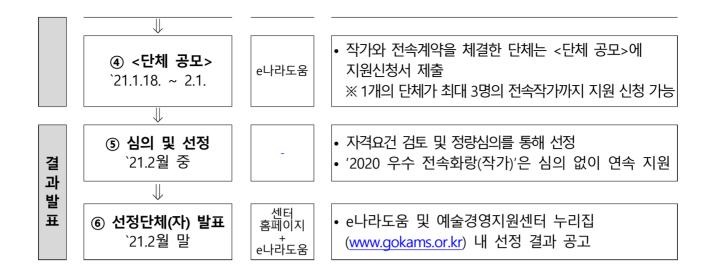
□ 공모개요

구분	내 용				
공모명	2021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<단체 공모>				
추진방향	- 전업 신진작가의 안정적 창작 활동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- 단체(화랑 등)의 효율적인 작가 발굴·육성 기반 조성 기회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지원				
공모기간	2021. 1. 18.(월) ~ 2. 1.(월) 17:00				
	< <u>작가 등록>을 통해 모집된 작가</u> 와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(화랑 등) • 2019~2020년 매년 2회 이상의 기획전을 개최한 단체				
지원 신청자격	* 기획전 : 상설전, 대관전, 아트페어 부스전 제외 * 연 2회 이상, 총 4회 이상 기획전 실적 작성 및 증빙 필수 (지원신청서 내 기재) * 기획전 실적 증빙은 전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(리플릿, 포스터, 도록 등)만 인정 가능, 전시 전경 이미지 인정 불가				
	• [업태: 소매업 / 종목: 화랑(갤러리), 미술품(예술품)]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 •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•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단체				
	• 연 매출액 100억 미만인 단체 (2019년 기준)				
	• 「미술공유서비스」(www.k-artsharing.kr) 기관 회원가입 작가와 전속계약 체결				
	 ※ 2021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<작가 등록>을 통해 모집된 등록 작가(풀)는 「미술공유서비스」내 '예비 전속작가제-등록작가' 메뉴에서 확인 가능 (* 등록 작가(풀) 공개 기간 : 2021. 1. 4.(월) ~ 2021. 2. 1.(월)) 				
	•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				
	•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				
신청자격	•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도, 시·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				
제외대상	• 국·공립(시·도·군립) 문화예술기관				
	• 보조금 관계법령 지원금 관리규정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				
	• 전속계약 시, '미술 분야 표준계약서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-11호)' 사용 필수				
지원조건	• 전속작가 창작활동비의 33.3% 자부담 (작가 1인당 월50만원 x 10개월)				
	* 작가 1인당 월별 창작활동비(150만원) = 국고보고금(100만원)+단체 자부담(50만원)				

구분	내 용		
지원내용	 <작가 등록>을 완료한 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가 공모에 최종 선정 될 시, • 전속작가에게 창작활동비 월 100만원 국고 지원 * 지원금은 해당 단체에게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, 해당 단체는 월 50만원 자부담 ● 단체에게 전속작가 홍보비* 지원 : 작가 1인당 연간 정액 250만원 * 홍보비 사용 가능 항목 ① 전속작가의 해외 매체광고비 (아트넷, 아트시, 아트아젠다 등) ② 국내 아트페어에 전속작가 참가 시 부스비		
지원기간	2021. 3. ~ 12. (총 10개월)		
지원규모	최대 98개 내외 단체 (작가 수 98명 기준) * 1개의 단체가 최대 3명의 전속작가까지 지원 신청 가능 * 단체 당 지원 작가 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원 단체 수는 축소될 수 있음		

□ 추진일정

U TÜZO				
	일정	등록	내용	
작 가 등	① <작가 등록> `20.11.16. ~ 12.14.	미술공유 서비스	• (신규가입자) 전속계약을 원하는 신진작가는 「미술공유서비스」(www.k-artsharing.kr) 회원가입 후 '작가 등록'을 통해 작가 정보 등록/업데이트, 지원신청서, 증빙자료 및 포트폴리오 제출 • (기존가입자) 작가 등록 진행	
록				
_	② 등록 작가(풀) 공개 `21.1.4. ~ 2.1.	미술공유 서비스	•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내 '예비 전속작가제-등록작가' 메뉴에 등록 작가(풀) 이력 및 포트폴리오 공개 ※ 별도 심의 없음	
단 체 공 모	③ 작가-화랑 전속계약 `21.1월 초 ~ 2월 초	미술공유 서비스 +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	 단체(화랑 등)는 전속계약을 원하는 작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「미술공유서비스」에서 전속 제의 ※ 작가-화랑의 전속계약은 자율적으로 체결하며, 센터에서 매칭하지 않음 전속계약 제의를 받은 작가는 원하는 단체 최종 선택 단체와 작가는 '미술 분야 표준계약서(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-11호)'를 사용하여 전속계약 체결 	



□ 공모 유형

1) 유형① : 신규 단체

2) 유형②: 2020 우수 전속화랑

* 2020 우수 전속화랑이 유형②에 지원할 경우, 별도의 심의 없이 선정 (단, 2020 전속작가와 계약을 유지하였을 경우에 한함)

* 우수 전속화랑이라도 신규 작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. 유형①로 지원

□ 신청방법

- O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(화랑 등)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'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'을 통해 직접 신청
- 신청기간 : 2021. 1. 18.(월) ~ 2. 1.(월) 17:00까지
 - * 2021. 2. 1.(월) 17:00까지 'e나라도움'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17:00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
- O 제출방법: 전자파일 형태로 'e나라도움'을 통해 제출

No	구분	제출서류
1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작성	• e나라도움 시스템 내의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
2	지원신청서	• 지원신청서 서식* 작성 후 제출 *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(www.gokams.or.kr)→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* 기획전 실적 및 전용 전시공간 운영 자료 포함 필수 (미제출 시 해당 실적 인정 불가)

3	단체 증빙서류	• 사업자등록증(JPG 또는 PDF 파일) 1부 * 사업자등록증 상 [업태 : 소매업 / 종목 : 화랑(갤러리), 미술품(예술품)]이 명시되어야 지원신청 자격 인정
4	전속계약서	• 작가와 협의 하에 작성되고 각각의 서명 및 도장이 날인(간인 필수)된 전속계약서 사본(PDF파일) 1부 * '미술 분야 표준계약서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-11호)' 사용 필수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 불가함

※ 'e나라도움' 내 공모신청 경로

사업수행관리>신청관리>공모현황>공모명:'2021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' 검색>신청서 작성

- ※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, 공인인증서 필요
- ※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, 개인회원 가입 불가
- ※ 본 지원 사업은 '예치형' 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
- ※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
- ※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: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-9595

□ 심의개요

- O 선정방법: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신청서 내 과거 사업성과 등 서류 정량심의를 통해 신규 단체를 선정하되, 동점 단체의 경우 선착순 기준으로 선정
- O 심의방향
 - 1) 화랑 운영의 제반 여건(홈페이지, 전용 전시공간 등) 보유 여부
 - 2) 전속작가의 장기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성(전시 기획, 아트페어 참가 등) 정도
 - 3)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경우 과거 사업 수행 성과 반영
- O 선정결과 :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

□ 선정단체 의무사항

- O 선정단체 및 작가 대상 사전 워크숍 및 맞춤형 강의, 차기년도 사업설명회 참석 필수
- O 화랑/전속작가 기획전 개최 조건* 충족 필수

- * 전속계약 2년 이내에 최소 1회의 기획전 / 3년 이내에 최소 1회의 개인전 개최 필수
 - ※ 단, 상기 전시는 선정단체의 전용 전시공간에서 개최한 전시로 한정
 - ※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에게만 적용
- 사업변경 시 (예산 변경, 홍보비 사용처 변경 등) 센터와 사전 협의 필수
- 모든 온라인·오프라인 홍보 및 인쇄물(홈페이지 포함)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「예비 전속작가제 지원」사업 BI 삽입
-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전속작가 프로모션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(증빙자료 포함) 연 2회 제출
- O 사업 종료 시 전속작가 창작활동비 지급 증빙(월별 원천징수영수증) 및 결과보고서 제출, 해당 사업 만족도조사 응답 필수
- 전속작가 작품 판매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(이미지 포함) 제출 필수(지정서식 제공)
 - ※ 제출된 상기 정보는 「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(www.k-artmarket.kr)」에 게재
- O「미술공유서비스」및 공식 SNS 홍보를 위한 전시 및 작가/작품의 정보 활용 협조
- O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매년 응답 필수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(※ 등록 완료 이후 수정 불가)
- O 해당 작가와 단체 대표가 친인척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 관계인 경우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불가함
 - ※ 친인척 관계로 밝혀진 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예정
- 지원신청 내용(과거 기획전 실적, 전용 전시공간 유무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또는 과거 수행했던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본 공모 이전 수행했던 지원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 교부 진행이 가능함
-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

- *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
- *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) 내에서만 가능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 - ※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
(예시: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,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)

- ※ 선정단체가 아트페어 주최 및 주관을 겸한 경우, 타 선정단체에서 해당 아트페어에 참가 부스비 집행 불가
- ※ 선정단체 간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집행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(특히, 타 선정단체의 대표자 및 갤러리스트에게 평론사례비 지급 불가)
- ※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(2020.2.27.)에 의거하여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 - *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
□ 관련문의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 시각예술유통팀

- 전화 : 02-2098-2919, 2932

- e메일 : <u>artre@gokams.or.kr</u>